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73
----------	-------

발의연월일 : 2025. 10. 29.

발 의 자 : 윤준병 · 이병진 · 송옥주
허영 · 안도걸 · 한병도
안호영 · 박희승 · 문대림
이원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 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높은 수준의 준법 및 윤리의식을 요구받는 금융회사 임원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성 · 청렴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금융회사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이러한 금융회사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공공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하는 선거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의 공공성 · 신뢰성을 저해하는 임원이 선임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임원 결격사유에 특정경제범죄, 금융관계법령 위반에 더해 선거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를 포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8호까지의”를 “제9호까지의”로 한다.

8.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 선거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 7. (생 략) <u><신 설></u>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 ----- ----- -----.
8. (생 략) ②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u>제8호</u> <u>까지의</u>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 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 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 니한다. ③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u>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u> <u>「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u> <u>한 법률」 등 선거관계법령에</u> <u>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u> <u>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u> <u>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u> <u>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u> <u>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u> <u>사람</u> 9. (현행과 같음) ② ----- ----- <u>제9호</u> <u>까지의</u> ----- ----- ----- ----- -----.
	③ (현행과 같음)